

- | 공급대상

- (단위 : m²,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59.7100A	59A	59.7100	21.3870	81.0970	48.4831	129.5801	242
59.9900B	59B	59.9900	21.4872	81.4772	48.7104	130.1876	126
59.9900C	59C	59.9900	21.4872	81.4772	48.7104	130.1876	14
74.9800A	74A	74.9800	26.8563	101.8363	60.8821	162.7184	50
84.9500A	84A	84.9500	30.4274	115.3774	68.9775	184.3549	116
합계							548

구분		59A	59B	59C	74A	84A	합계
국가유공자		12(60)	6(30)	1(5)	2(10)	6(30)	27(135)
북한이탈주민		2(10)	1(5)	-	1(5)	1(5)	5(25)
철거민		7(35)	4(20)	-	1(5)	4(20)	16(8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15)	2(10)	-	1(5)	1(5)	7(35)
중소기업 근로자		2(10)	1(5)	-	1(5)	1(5)	5(25)
장애인	경기도	5(25)	3(15)	1(5)	1(5)	3(15)	13(65)
	서울특별시	3(15)	1(5)	-	-	1(5)	5(25)
	인천광역시	2(10)	1(5)	-	-	1(5)	4(20)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에 한하여 가능하며, 각 주택형별 배정세대수의 500%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6.09.30 예정)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된 분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구비여부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무주택 요건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공급대상 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6.09.30 예정)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분(단,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26.09.30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특별공급 또는 동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다만, 동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에 있는 분 등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 ※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층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합니다.

III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일정

구분	일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6.09.30.(수)(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건본주택 개관	2026.10.03.(토)(예정)	• 당사 건본주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번지
특별공급 신청	2026.10.12.(월)(예정)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첨자발표	2026.10.20.(화)(예정)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계약체결	2026.12.07.(월) ~ 12.11.(금)(예정)	• 당사 건본주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번지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건본주택 별도 문의)

※ 청약 신청일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별도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불가)
- 확정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별표3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부터 3년(단, 전매제한기간 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거주무기간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고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으로 공급합니다.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부적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신청 주택형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하여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 수도권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대략적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청약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안내문에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시도



※ 위치도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지구 주변도로 및 교통시설, 개발계획 등은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의 사업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26.09.30 입주자모집공고(예정)를 위해 준비 중인 자료로서 미확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상태이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확정된 공급주택 관련 이미지 자료 등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CONTACT US

부천 대장을 대표할 자부심의 첫 주소, 부천대장 하우스스토리 디센트

견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부천대장 하우스스토리 디센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A-2BL

공공분양 총 548세대 59A㎡ | 59B㎡ | 59C㎡ | 74A㎡ | 84A㎡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 특별공급 신청 배정내역(추천양식) - 양식

주택형	NO	유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84A	확정	장애인	XXX	XXXXXX-XXXXXX	XXX-XXXX-XXXX
84A	예비	장애인	XXX	XXXXXX-XXXXXX	XXX-XXXX-XXXX

-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 예비추천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 (예비추천인 명단 배정 시)
- ※ 2026년 10월 2일(금) 오전 중으로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회신을 요청드리며, 기간 내 미 통보 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에서 추천대상자 명단을 한국부동산원에 등록(미등록 시 청약불가) 마감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관계로 회신 요청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